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5일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20.1.1.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방채 및 공사채 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이양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며 재정지원계정 및 용자관리계정의 재원규모를 명확히 하는 등 개정된 법령('20.1.1일 시행) 및 개정 예정인 시행령(안)을 반영하여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2017년 7월 관련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6조제2항, 안 제9조제5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8조제2항)
- 시도 조합회의 구성위원을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으로 개정함.(안 제6조제2항제1호)
- 지역상생발전기금 용자관리계정의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24조)

- 전환사업보전계정 신설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별 재원·용도 정비(안 제26조 신설, 안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강근)

가. 제출배경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하고, 이를 관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설립함. (17개 시·도 합의)

□ 기금 개요

- 설치목적 :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기금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활용
- 설치년도 : 2010년 5월 7일
- 조합구성 : 20명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전문가 2인)
- 주요내용

| 구 분 | 재 원 | 용 도 |
|--------------------------|--|---|
| 재정지원 계정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출연금 1/2 (출연: 수도권 잔여분 지방소비세의 35%) |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 조합운영경비 등 |
| 용자관리 계정 | " | 지자체 용자요구사업 (사업개발 지방채 차환 등) |
| 전환사업 보전계정 (20~'22) | 지방소비세 중 균특회계 지방 이양사업 보전분 (정액, 3.6조원) ※지방기금법 제17조의2 |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관련 별표 |

<수도권 규제 합리화 개발이익 지방지원 방안>

- ➔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매년 일정비율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10년간(2019년까지) 출연하여 지방을 지원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이양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용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시행 2020. 1. 1.)되었음.

- 이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규약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음.
 - 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서면회의(안건 부의일: 2019. 2. 6)를 거쳐 17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 제48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임시회의(20.2.6.)에서 전원찬성으로 개정안 확정

나. 주요내용 및 검토 의견

-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 2020. 1. 1.)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0. 2. 25.)에 따라 기금의 전환사업보전계정 신설, 재정지원 계정 및 용자관리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문구, 인용 법령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안 제5조는 조합의 사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을 조합의 사무에 신설하였음.
 - 이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보전을 위해 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함.

○ 본 규약안에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2017년 7월 관련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것임.

※해당조항: 안 제6조제2항, 안 제9조제5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8조제2항

○ 안 제16조(발전기금의 계정 구분)에서, 기존 계정(재정지원계정, 용자관리계정)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추가한 것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에 따른 것으로, 이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2. 25.>

②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2. 25.>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용자관리계정
2. 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3.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

○ 안 제19조(재정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안 제21조(용자관리계정의 재원과 용도), 안 제26조(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

- 각 계정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 5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각 계정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3.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제13조의4(용자관리계정의 재원) 용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2.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용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0. 2. 25.]

- 안 제24조(기금운용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 12. 31.>
 1. 발전기금을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용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용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3. 용자에 대한 결산
-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⑦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3. 지방재정·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2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 안 부칙 제2조(발전기금 재원·용도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의 개정규정을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부 칙 <제30473호, 2020. 2. 25.>

제3조(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및 계정별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안 부칙 제3조에서,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제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법률 제16856호, 2019. 12. 31.> 제2조에 따른 것임.

※ 전환사업보전계정은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의 일환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 보전을 위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 칙 <법률 제16856호, 2019. 12. 31.>

제2조(적용기한)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본 규약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 신설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연도별 상생기금 지원현황(정산기준)

□ 출연 및 배분 현황

(2019. 12월 기준, 억원)

| 구분 | 총계 (01년~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수입(출연) | 38,210 | 3,079 | 3,391 | 3,456 | 3,558 | 3,711 | 3,614 | 3,826 | 4,333 | 4,425 | 4,817 | 4,422 |
| 서울 | 17,544 | 1,497 | 1,627 | 1,644 | 1,681 | 1,745 | 1,675 | 1,755 | 1,967 | 2,000 | 1,953 | 2,015 |
| 인천 | 3,533 | 278 | 311 | 318 | 330 | 347 | 340 | 361 | 412 | 422 | 414 | 418 |
| 경기 | 17,133 | 1,304 | 1,453 | 1,494 | 1,547 | 1,619 | 1,599 | 1,710 | 1,954 | 2,003 | 2,450 | 1,989 |
| 배분 | 38,210 | 3,079 | 3,391 | 3,456 | 3,558 | 3,711 | 3,614 | 3,826 | 4,333 | 4,425 | 4,817 | 4,422 |
| 재정지원 | 25,000 | 3,079 | 3,391 | 3,456 | 3,558 | 3,711 | 1,807 | 1,915 | 2,169 | 2,215 | 2,411 | 2,214 |
| 서울 | 1,055 | 107 | 119 | 135 | 143 | 147 | 73 | 77 | 82 | 88 | 84 | |
| 부산 | 1,198 | 141 | 154 | 157 | 158 | 160 | 76 | 81 | 86 | 88 | 97 | |
| 대구 | 2,669 | 332 | 301 | 331 | 333 | 347 | 184 | 195 | 207 | 219 | 220 | |
| 인천 | 787 | 94 | 101 | 101 | 101 | 106 | 47 | 48 | 50 | 53 | 86 | |
| 광주 | 2,817 | 317 | 336 | 342 | 344 | 358 | 156 | 175 | 264 | 246 | 279 | |
| 대전 | 2,364 | 281 | 291 | 294 | 302 | 303 | 160 | 170 | 180 | 191 | 192 | |
| 울산 | 2,425 | 294 | 333 | 300 | 302 | 315 | 149 | 154 | 163 | 172 | 243 | |
| 세종 | 55 | | | | | | 7 | 9 | 12 | 13 | 14 | |
| 경기 | 1,061 | 107 | 120 | 130 | 137 | 145 | 77 | 81 | 86 | 92 | 86 | |
| 강원 | 2,112 | 194 | 242 | 263 | 279 | 296 | 157 | 166 | 176 | 180 | 159 | |
| 충북 | 1,706 | 188 | 246 | 206 | 207 | 218 | 88 | 97 | 157 | 142 | 157 | |
| 충남 | 1,305 | 139 | 158 | 167 | 177 | 186 | 87 | 90 | 95 | 98 | 108 | |
| 전북 | 1,371 | 149 | 183 | 170 | 179 | 186 | 90 | 94 | 100 | 106 | 114 | |
| 전남 | 2,262 | 233 | 260 | 293 | 310 | 329 | 152 | 158 | 167 | 173 | 187 | |
| 경북 | 2,192 | 234 | 263 | 276 | 290 | 305 | 149 | 156 | 165 | 169 | 185 | |
| 경남 | 1,489 | 176 | 182 | 186 | 187 | 198 | 100 | 105 | 112 | 117 | 126 | |
| 제주 | 829 | 92 | 101 | 104 | 107 | 111 | 54 | 57 | 65 | 66 | 72 | |
| 사육 | 15 | 1 | 1 | 1 | 2 | 1 | 1 | 2 | 2 | 2 | 2 | |
| 융자지원 | 10,498 | | | | | | 1,807 | 1,911 | 2,164 | 2,210 | 2,406 | 2,208 |

* 2019년 : 수도권 당초예산 편성기준

** 2020년 : 시도 배분액 미확정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5년에 조합에 가입하여 2015년부터 기금 배분